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익사업에 철도운수사업 추가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확대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익사업에 철도운수사업 추가(안 제7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3
2.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7

I. 제안경위

2023년 11월 24일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3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사업 등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간산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철도의 화물운송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화물열차를 운행·관리하는 경우 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4%에 해당하나, 철도가 수송하는 화물인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은 산업활동 및 국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운송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한편, 철도, 항공과 같이 업무의 운영일정과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폐지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연 역시 공중의 일상을

저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운행표에 따른 정시운행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하였던 정차시간·규정속도를 준수한 운행(소위 “준법투쟁”)에 따른 운송량 감소 사례를 들 수 있음.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연 및 정지·폐지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7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관

현행법 제71조제1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¹⁾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의 조정 시 우선적으로 처리²⁾되고, 조정 시 일반사업보다 긴 조정기간이 적용되며,³⁾ 사용자·근로자·공익을 각각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일반사업의 조정위원회와 달리 3인 모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⁴⁾, 쟁의행위를 중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됨.⁵⁾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와 함께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의 도급·하도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례가 추가적으로 적용되고⁶⁾,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⁷⁾하여 해당 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

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필수공익사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⁸⁾

<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비교 >

구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정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내용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필수공익사업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시행령 별표 1에 별도 규정
효과	- 노동쟁의 조정의 우선적 취급(제51조) - 조정기간 특례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제54조) - 공익사업 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설치(제72조) - 긴급조정(제76조)	- 필수공익사업 중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제42조의2)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자 채용등 금지 적용 제외(제43조)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제42조의2)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이와 같이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의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공익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임.

2. 공익사업에 철도운수사업 추가(안 제7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철도운수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이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公 衆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 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 ----- ----- ----- ----- -----.
1. <u>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 공운수사업</u> <u><신 설></u>	1. <u>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u> <u>1의2. 항공운수사업 및 철도운수 사업</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체계상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결정되는 구조임. 그런데 현행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철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이에 따르면 철도사업의 경우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철도사업 중 철도차량을 이용한 여객운송은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이며, 그 외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철도건설·터미널 운영업 등은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시멘트 화물열차 운행 횟수 급감으로 시멘트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⁹⁾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화물열차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철도운수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열차 뿐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포

9) 중앙일보, 「철도파업에 시멘트 운송 급감...이틀째 열차 감축 이용객 불편」, 2024.12.6.

10) 서울신문, 「파업때마다 ‘혼란’...화물열차·열차승무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란’」, 2023.10.2.

함시킴으로써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열차의 운행이 공익사업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에도 포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화물열차 운행이 현행법상 공익사업의 요건인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인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①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②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③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1.3%로 낮은 수준이며, 수송량 및 분담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바, 이를 감안하면 화물철도 운행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등의 필수공익사업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음.

< 연도별 철도 수송량 및 수송 분담률 >

(단위 : 백만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물동량	1,976	2,029	2,047	1,984	1,927	1,990
철도 수송량	33	32	31	29	26	28
분담률	1.6	1.6	1.5	1.4	1.4	1.3
증가율	△12.2	△2.7	△2.4	△7.3	△8.3	1.9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국토교통 통계연보」, 2024..

다만, 화물철도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등 고중량 품목을 집중적으로 수송하고 있으며,¹¹⁾ 특히 시멘트의 경우 생산량의 20%를 철도로 수송하고 있다는 점¹²⁾을 고려할 때 특정 품목의 경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한 영향력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물열차 운행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현행 시행령 별표 1의 내용¹³⁾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열차의 운전 업무, 관제 업무 등 화물열차의 운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화물열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포함하는 데 따른 공익적 이익과 화물열차 종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11) 2023년 기준 철도의 화물수송실적은 약 2,126만톤으로, 이 중 컨테이너가 약 783만톤으로 36.8%를, 시멘트가 약 739만톤으로 34.8%를, 철강이 약 199만톤으로 9.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 『2023 철도통계연보』, 2024)

12) 국토교통부,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22-2026)」, 2023.4.

13) 현행 시행령 별표 1은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한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으로 ‘철도운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철도사업에 관한 법률인 「철도사업법」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철도사업”으로 정의¹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철도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헌법에서 노동3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공익사업은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②철도화물 운송사업은 병원·수도·전기사업 등 타 필수공익사업과 달리 그 업무의 정지로 즉각적·직접적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¹⁵⁾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파업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축소해야“, 2019.6.11.일자
서울파이낸스, ”항공·공항 노조 “필수유지업무’ 폐기, 파업권 보장하라“, 2018.9.17.일자

3.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을 현행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로 인해 현행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정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정의행위의 제한) ① ----- ----- ----- -----지연되거나 정지·폐지----- ----- ----- -----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필수유지업무의 요건 중 ①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를 “지연되거나 정지·폐지”되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이로 인해 ②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를 정함에 있어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저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 정하게 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철도노조가 정차시간·규정속도를 준수한 운행을 실시하는 소위 ‘준법투쟁’을 하면서 열차가 지연되어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한 사례¹⁶⁾가 있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의 경우 그 정지·폐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본권인 쟁의권이 제한되는바 쟁의권 행사를 통해 제한되는 국민 다수의 공공이익 간의

16) 연합뉴스,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일부 열차 지연…시민들 빠듯한 출근길”, 2024.11.18.일자

비교형량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국민경제에 대한 과급효과’를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쟁의권이 사전적으로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에서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과 쟁의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정’¹⁷⁾ 제도에는 해당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관련한 공익의 보호가치와 국민경제와 관련한 공익의 보호가치를 달리 보아 근로자의 쟁의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업무의 ‘지연’을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의 ‘지연’은 정지·폐지와 달리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단체행동이며, 최근 문제가 된 열차 지연 사례는 업무 관련 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제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①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업무의 ‘지연’ 개념이 모호하고 원인도 다양할 수 있어 정상적인 업무 저해 여부 판단이 어려우며, ②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제도¹⁸⁾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하여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18)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노동위원회 중재를 하도록 ‘직권 중재제도’를 규정하였으나,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동 규정을 삭제하였음.

참고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Depot Maintenance, 대규모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여 수행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